

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7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8.

발 의 자 : 한병도 · 조계원 · 윤건영
박정현 · 채현일 · 이광희
이기현 · 장철민 · 양부남
홍기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분야로 잦은 이상기후 발생과 재난 발생 유형의 복합 다양화 추세에 따라 안전산업 시장 수요와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음. 또한, 인공지능(AI), 사물인터넷(IoT)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임.

그러나,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대부분이 중소·영세하여 민간 주도의 자발적 기술개발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신기술 확보, 제품인증, 판로개척 등 재난안전산업의 전주기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관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함.

이에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통합·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 근거와 주요 기능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).

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·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

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재난안전산업의 진흥과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·제도의 조사·연구 지원
2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
3.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·평가·관리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
4.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및 수요 조사 지원
5.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통계의 조사·분석 및 정보의 관리 지원
6.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

7. 재난안전산업의 창업·사업화,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
8.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·조성 지원
9. 재난안전신기술 지정, 재난안전제품 인증 및 사후관리와 활성화 지원
10. 재난안전산업의 투자 및 융자 활성화 지원
11.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사업
12.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·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3조의3(진흥원에 대한 감독 등) ①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를 감독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의 장부, 서류나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3조의2(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·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</u> <u>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</u> <u>③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<u>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u> <u>1. 재난안전산업의 진흥과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·제도의 조사·연구 지원</u> <u>2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</u> <u>3.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·평가·관리 및 기술개발 촉진 지</u>

원

4.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및
수요 조사 지원

5.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통
계의 조사·분석 및 정보의
관리 지원

6.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
양성 지원

7. 재난안전산업의 창업·사업
화,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
원

8.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
단지의 지정·조성 지원

9. 재난안전신기술 지정, 재난
안전제품 인증 및 사후관리
와 활성화 지원

10. 재난안전산업의 투자 및
융자 활성화 지원

11.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
따라 위탁을 받은 사업

12.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
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사업
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의
설립·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
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

<신 설>

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3조의3(진흥원에 대한 감독

등) ①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를 감독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의 장부, 서류나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